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정 2007.08.23.
개정 2014.06.25.
전부개정 2016.11.29.
개정 2018.10.30.

제1장 총 칙

- 제1조(근거 및 목적)** ① 이 규정은 국민체육진흥법 제34조 및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 라 한다) 규약 제34조의 규정에 근거하고 가맹단체 가맹·탈퇴규정에 의거 가맹이 승인된 종목별 경기단체 및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0.30.>
- ② 가맹단체는 당해 종목 또는 해당 장애유형별 체육단체의 대표성을 가지고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이하 '중앙 가맹단체' 라 한다)에 준하여 명칭을 정하되, 경기단체는 서울특별시장애인○○협회(또는 연맹)이라 칭하고, 영문명칭도 정해야 한다. 또한 유형별 체육단체도 이를 준용하여 서울특별시를 대표할 수 있는 명칭과 영문명칭을 정해야 한다.

제2조(소재지) 가맹단체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2장 사 업

- 제3조(목적 및 지위)** ① 가맹단체는 각 소관 경기종목 및 해당 장애 영역의 운동을 서울특별시 전역에 널리 보급하여 장애인의 체력을 향상케 하며, 경기인 및 그 단체를 통할·지도하고 우수한 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 및 장애인체육문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건강증진 및 건전한 여가생활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 ② 가맹단체는 당해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 가맹단체와 국제장애인경기연맹 또는 국제장애인체육기구에 대한 교섭권을 갖고, 지역을 통할하는 유일한 체육단체로서 서울특별시를 대표한다.
- ③ 장애유형별 체육단체는 해당 장애유형별 국내·외 종합대회를 개최 및 참가할 수 있다.

제4조(사업) ① 경기단체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해당 종목의 기본방침 심의·결정
 2. 해당 종목에 관한 자문 및 건의
 3. 해당 장애유형별분과위원회 및 지역규모연맹체 설치 및 운영
 4. 해당 종목에 관한 전국대회와 지역대회 개최 및 참가, 중앙 경기단체의 승인을 받은 국제대회 개최
 5. 해당 종목 대회의 주최 및 주관
 6. 해당 지부의 지원 및 육성
 7. 해당 종목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8. 해당 경기종목의 선수, 동호인부, 지도자 등록 및 관리
 9. 해당 종목의 선수, 심판, 등급분류사, 운영요원 등의 양성
 10. 해당 경기종목의 동호인 및 스포츠클럽 육성 지원
 11. 해당 종목의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12. 해당 종목의 경기시설·장비의 개발·개량
 13. 해당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14. 해당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
 15. 해당 경기종목의 경기규정집 발간
 16. 장애인체육회, 중앙경기단체, 장애유형별 중앙체육단체와의 업무교류
 17. 해당 경기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 ② 경기단체는 구지부의 요청에 따라 소관범위 내 종목 보급 및 대회개최를 승인할 수 있다. 다만, 서울특별시 규모의 사업은 경기단체가 주최하여야 한다.
- ③ 유형별 체육단체는 해당 영역의 스포츠 발전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유형별 서울특별시를 대표하는 유일한 유형별 체육단체로서 장애유형별 전국규모 종합대회를 참가 및 개최할 수 있다.
1. 해당 체육단체에 관련된 장애 유형별 중앙체육단체, 종목별 중앙경기단체와의 교류
 2.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에 관한 자료 수집 및 조사통계
 3. 해당 장애 유형별 체육단체에 관련된 경기종목에 관한 홍보
 4. 장애인체육회, 장애 유형별 중앙체육단체, 종목별 경기단체와의 업무교류
 5.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6.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와 관련된 유형별장애인분과위원 해당 경기단체 추천
 7. 해당 유형별 체육단체 지부의 지원 및 육성
 8. 해당 유형별 경기기술의 연구 및 향상
 9. 해당 유형별 경기에 관한 자료수집 및 조사통계
- ④ 경기단체는 제1항 제12호의 공인과 관련하여 국제공인 규정을 벗어난 공인요건을 신설하거나 특정업체의 제품사용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가맹단체 지원 육성

제5조(권리와 의무)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6조에 따라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할 의무를 진다.

② 준가맹단체는 제5항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제4항에서 정한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

③ 인정단체는 제4항 및 제5항에서 정한 권리와 의무관계를 적용받지 아니한다. 다만, 인정단체는 승인 시 명시된 승인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④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권리를 가진다.

1. 장애인체육회 대의원 총회에 대의원을 파견하여 발언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
2.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건의 및 소청 할 수 있다.
3. 장애인체육회가 주최·주관 및 승인하는 사업에 참가할 수 있다.
4.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하는 사업을 주최·주관 및 후원할 수 있다.

⑤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 대하여 다음의 의무를 갖는다.

1. 장애인체육회 규약과 규정 및 의결된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해당 국제경기단체와 중앙 가맹단체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가맹단체의 사업계획서, 수지예산서, 전년도 사업보고서 및 수지결산서, 회의참석 확인서, 회의록을 그 단체의 총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가맹단체가 의무를 위반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 규정에 의거해 제명할 수 있으며, 의무사항을 해태 또는 불이행할 경우 예산 및 지원사항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 할 수 있고, 가맹단체의 불투명한 회계처리 등 직무관련 비리 임·직원에게 대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⑧ 장애인체육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⑨ 가맹단체는 제8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 직접 징계 또는 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직원에 대해 가맹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6조(관리단체지정) ①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의 지도육성에 필요한 방안을 강구함은 물론 경기인의 체육활동을 권장 보호하거나 육성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가 다음 제1호 내지 제7호 중 어느 하나의 사유로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또는 제8호에 해당될 때 장애인체육회는 규약 제9조에 정한 바에 따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가맹단체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 직접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1. 장애인체육회 규약, 규정 등의 중대한 위반
2.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3. 60일 이상 장기간 가맹단체장의 결위 또는 사고
4. 당해 종목을 소관하는 중앙 가맹단체와 국제장애인경기연맹 또는 해당 영역의 국제 장애인

인체육기구와의 분쟁

5.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6.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7. 가맹단체 평가에 의거 부진단체로 3회 지정 시
 8. 경기력향상을 위해 장애인체육회의 직접 육성관리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경우
- ③ 관리단체 지정 즉시 해당 단체 임원은 당연 해임된다.
 - ④ 관리단체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정한 관리단체 운영 규정에 따른다.
 - ⑤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맹·탈퇴 규정에 의거하여 조치할 수 있다.
 - ⑥ 가맹단체로서 의무사항을 게을리 할 경우에는 제5조에서 정한 권리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체육회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감액, 회수, 중단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7조(평가 및 지위변경) ①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에서 매년 실시하는 평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장애인체육회는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가맹단체에 대하여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부진단체는 1회 지정 시 지원금 삭감, 2회 지정 시 단체 지위 강등, 3회 지정 시 관리단체로 지정
 2. 우수단체의 경우 지원금 증액, 단체지위 상승 등 인센티브 부여
- ③ 평가 방법 및 절차 등은 전문체육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시행한다.

제4장 지부 및 지역규모연맹체

제8조(지부) ① 가맹단체는 당해 대의원 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각 구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가맹단체 구 지부는 서울시 가맹단체 지부승인을 받은 후 해당 구 장애인체육회에 가맹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② 가맹단체 지부의 권리 및 의무는 제5조에 준한다.

제9조(지역규모 연맹체) ① 가맹단체는 당해 대의원총회의 승인으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지역규모연맹체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가맹단체는 지역규모연맹체의 조직 및 운영과 권리 및 의무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로 별도 규정을 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임원

제10조(임원) ① 가맹단체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2인 이상 6인 이내의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 14인 이상 27인 이내

3. 감사 2인

② 선임임원 중 감사 1인은 회계경험자를 선임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서 정한 선임임원의 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증감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회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만 중임(중임횟수 산정 시 가맹단체의 임원의 경력도 포함한다)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맹단체의 임원은 장애인체육회 규약 제3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임원심의위원회의 결정으로 임원중임 횟수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③ 제1항에 따라 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이외의 다른 임원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부회장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나 이사 및 감사로 활동한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이사 및 감사의 임기 횟수 제한을 산정할 때에는 회장 및 부회장으로 활동한 기간을 포함한다.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사회회의 의결로 정한 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의를 거쳐 각 호에 따라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1.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시 임원경력이 필요한 경우

2.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기여가 명확한 경우

⑦ 제2항의 임원심의위원회 위원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장애인체육회장이 위촉한다.

⑧ 장애인체육회 임원심의위원회는 임원선출 총회 후보자 등록 전에 심의하여 예외 적용여부를 결정한다.

⑨ 임기의 가산은 일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임원을 선출한 정기총회를 기준으로 한다.

⑩ 회장은 회장으로 당선된 후 처음으로 개최되는 정기총회일에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본다.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임원으로 선임된 정기총회일을 기준으로 한다.

⑪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임원수가 증원되어 선임된 임원의 임기 또한 다른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회장의 선출) ①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의 선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회장선거는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유효투표 중 다수의 득표를 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2. 다수 득표수가 동수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3.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유효투표수의 과반수 찬성표를 얻은 경우에 당선된다.
-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장애인체육회가 직선제 등 선출방식 개선을 지시할 수 있으며, 가맹단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 ④ 회장이 궐위된 경우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
 1. 잔여임기가 1년 미만인 경우, 제17조 제2항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60일 이내 대의원총회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2. 잔여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60일 이내 회장선출기구에서 회장을 선출한다.
 3. 위 제1호, 제2호에 따라 회장을 선출하는 경우 새로 선임된 회장의 임기는 모두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가맹단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5명 이상 7명 이내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하되 가맹단체 임원이 과반수를 넘을 수 없다.
- ⑥ 이 규정에 정한 것 외에 회장 선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가맹단체가 별도로 정한 후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3조(임원선임) ① 부회장 및 이사는 회장이 추천한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임한다. 단, 대의원총회의 의결로 선임권한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차기 총회에서 선임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임원 구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이 반드시 충족되어야 한다.
 1. 동일기관 재직자가 재적임원수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다.
 2. 이사 중 3인 이상은 장애인선수 출신으로 한다.
 3. 대의원총회에서 직접 선임하는 비정기인(학계, 언론계, 법조계 등)이 재적임원수의 20/10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4. 여성 임원이 재적 임원수의 30/100 이상 포함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되, 대의원 중에서 1인, 공인회계사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1인을 선임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리인은 감사에 선임될 수 없다.
- ④ 부회장과 이사의 결원이 있을 때에는 회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회에서 보선하되 차기 총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⑤ 대의원은 임원에 선임될 수 있으나, 재적이사(회장, 부회장 포함)의 5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동일 구 가맹단체 및 지역규모연맹체의 회장 또는 부회장은 1인을 초과하여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 ⑥ 가맹단체의 임원이 해당 가맹단체의 다른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 ⑦ 가맹단체의 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중앙가맹단체의 승인동의서를 첨부하여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 취임하며,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신원사항이나 관련사항을 조회할 수 있다.
- ⑧ 가맹단체의 임원 승인 후에 임원의 결격 및 기타 사유가 드러나 승인에 하자가 있는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승인을 취소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맹단체는 이에 따라

야 한다.

- ⑨ 장애인체육회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임원 승인을 사무처장이 우선 승인할 수 있으며 차기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 ⑩ 제17조 제2항에 따라 부회장이 직무를 대행하고자 할 때에는 즉시 장애인체육회에 그 사실을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⑪ 전기 9개항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에 준한다.
- ⑫ 가맹단체 임·직원의 상벌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갖지 아니한 자는 가맹단체 회장이 될 수 없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으며, 선임 이후에도 그에 해당한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이 상실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 원 미만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8.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1년 이상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단, 승부조작, 폭력·성폭력, 횡령, 배임, 편파판정으로 대한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시도지부 및 회원종목단체 포함)에서 1년 이상의 자격정지 이상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영구히 임원에 선임될 수 없다)
9.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 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승부조작, 직권남용, 사익추구 등의 비위, 또는 직무태만에 따른 징계나 관리단체 지정 등으로 해임된 사람
10.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 가맹단체, 시·도장애인체육회, 시·도가맹단체 또는 대한체육회 등 체육단체에서 주최하는 경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승부조작에 가담하여 「형법」 제314조 및 「국민체육진흥법」 제47조 및 제48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
11. 국회의원

- ③ 회장의 친족(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은 그 경기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 ④ 가맹단체와 거래관계에 있는 사업체의 임·직원은 가맹단체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다만, 가맹단체의 필요에 따라 해당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단체는 해당자로부터 가맹단체와 위법·부당한 거래를 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받아 총회에서 선임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임원과 가맹단체 간 거래관계에 위법·부당의 이의가 제기되면 장애인체육회는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 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체육단체 및 그 가맹경기단체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임원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이 소속되어 있는 가맹단체는 문화체육관광부 및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대한장애인체육회, 중앙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⑦ 가맹단체 임원으로 전국 및 학생체전, 전국규모대회에 타 시·도 가맹단체의 감독, 코치로 참가할 시에는 자동적으로 임원 자격을 상실한다.

제15조(명예회장 및 고문) ① 가맹단체에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바에 따라 명예회장 1인 및 약간인의 고문을 둘 수 있다.

- 1. 명예회장은 총회에서 추대하며, 이사회 및 총회에 참석하여 자문할 수 있다.
- 2. 고문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② 제16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회장 및 고문에 위촉될 수 없고, 재임 중 이에 해당하는 자로 밝혀졌을 때에는 당연히 해촉된다.

제16조(동일인의 겸직제한) ① 동일인이 다른 가맹단체의 대의원 또는 임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대한체육회 가맹 종목의 경기단체 대의원 또는 임원은 겸직할 수 있다.

- ② 동일인이 다른 가맹단체의 회장선출에 후보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후보자 등록신청 전까지 현재 소속 가맹단체의 임원직을 사임하여야 한다.
- ③ 가맹단체장은 해당 가맹단체 산하 구지부 회장 및 지역규모 연맹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다.
- ④ 선임임원 중 회계전문가로서 감사로 선임된 자는 타 가맹단체의 감사를 겸임할 수 있다.
- ⑤ 선임 임원은 해당 경기단체 및 다른 경기단체의 선수를 겸할 수 없다.

제17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가맹단체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궐위되었거나, 또는 사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회장이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외국 국적의 부회장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할 수 없다.
- ③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그 직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 ④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
 - 1. 가맹단체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사항

2. 이사회와 그 업무를 감사하는 사항
 3. 가맹단체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및 이사회와 그 업무에 관하여 회장,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사항
 4.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비위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되지 아니할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는 사항
 5. 제4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 이사회 또는 대의원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사항
- ⑤ 가맹단체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범죄사실로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소된 범죄사실의 법정형이 벌금형만 있는 경우
 2.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
 3. 과실범으로 기소된 경우
- ⑥ 가맹단체의 임원이 동 단체의 운영 이외의 범죄사실로 구속 기소되었을 경우 그 직무가 정지된다.
- ⑦ 가맹단체의 임원이 된 자가, 해당단체에서 직무가 정지되었을 경우 가맹단체 임원으로서의 직무도 당연 정지된다.
- ⑧ 고문은 회장 부회장의 자문기관이며 참여는 이사회와 자문기관이다. 고문 및 참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 제18조(임원의 사임 및 해임)** ① 이사 및 감사가 사임할 경우에는 회장 또는 그 직무대행자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회장이 사임할 경우에는 사무처에 사임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 감사 또는 회장이 사임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과 동시에 사임한 것으로 본다.
- ② 가맹단체가 관리단체로 지정된 경우에는 지정 즉시 해당 단체의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 ③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이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안건으로서 통지된 경우, 그 시점 이전 30일부터 관리단체 지정 절차가 종료될 때까지는 임원의 사임 효력이 발생되지 아니한다.
- ④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임한 것으로 본다.
1. 제13조 제6항에 따라 장애인체육회로부터 승인이 취소 또는 철회된 자
 2. 제14조에 해당하는 때
 3. 가맹단체 및 지역규모연맹체의 임원 또는 체육단체를 대표하는 자가 해당 단체에서 해임되거나 사임하는 경우
- ⑤ 회장, 부회장 및 이사가 사임할 때에는 해당 가맹단체는 그 사실을 7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로 보고하여야 한다.

- 제19조(장애인체육회의 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구 지부 임원에 대한 징계 요구)**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단체 및 가맹단체 구 지부 임원에 대해 구체적 징계수위를 정하여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징계요구에 따라야

한다.

1. 임원 직위를 이용하여 관련 종목의 시설운영과 사업운영에 관여하거나, 해당 단체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자
 2. 친족간 업무위탁 및 도급에 관여한 자
 3. 공금횡령, 편과 판정, 승부조작, 폭력, 직권남용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품위를 손상시킨 자
 4. 해당 가맹단체의 규정을 위반한 자
 5. 제5조 제7항의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 ② 징계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법제상벌위원회 규정에 따른다.

제6장 대의원총회

제20조(대의원 선출방법) ① 가맹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단체 구 지부의 장
 2. 해당 종목 선수위원회 대표
- ② 유형별 체육단체의 대의원은 다음과 같다.
1. 가맹단체 구 지부의 장
 2. 지역규모 종목별 위원회의 장
- ③ 가맹단체 구 지부의 장 및 지역규모연맹체의 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총회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대리인을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인을 5일전에 가맹단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하며, 그 대리인의 권한은 해당 총회에서 만 대의원과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
- ④ 동일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각호의 직을 겸할 수 없다.
- ⑤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대의원은 총회에 대리참석이 불가하다.

제21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총회는 제20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의 대의원 또는 그 대리인으로 구성한다.

- ② 총회는 당해 가맹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으로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당해 단체의 해산 및 정관(규약) 변경에 관한 사항
 2. 가맹단체 구 지부 설치 및 제명
 3. 지역규모연맹체 가맹과 제명
 4.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 사업계획 및 예산승인에 관한 사항
 6. 사업보고 및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주요사항
- ③ 제1항, 제2항에 의한 대의원을 구성하는 가맹단체 중 등록 지부수가 적어 대의원구성이 5

인 이하인 가맹단체는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정기총회와 임시총회) ①가맹단체의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회장이 소집한다.

②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15일 이내에 회장이 개최하여야 한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이사 과반수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3. 구체적 안건을 명시한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4. 제17조 제4항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③ 제2항의 제2호 내지 제3호의 경우에 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총회를 개최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집요구를 한 이어나 대의원이 가맹단체장에게 요청한 총회 소집 요청서를 첨부하고 회의안건, 일시, 장소를 명기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이사 또는 대의원이 총회를 소집한 경우에는 이사 또는 대의원 중 연장자가 총회의 소집권자가 되고, 대의원 중 연장자의 사회로 출석대의원 중에서 의장을 선출한다.

④ 총회의 소집은 늦어도 개최 7일전에 안건·일시 및 장소를 명기하여 서면으로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총회는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대의원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에 대하여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⑥ 총회의 결과는 이 규정 제5조 5항에 의거하여 회의 종료 후 10일 이내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⑦ 가맹단체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을 준용한다.

제23조(의장) ① 회장이 총회의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제22조 제3항에 따라 이어나 대의원이 소집한 총회의 경우에는 출석대의원의 의결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4조(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대의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대의원총회 의결은 서면결의로 할 수 없다.

제25조(임원의 불신임) ① 총회는 임원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해임을 의결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② 제1항에 따라 해임을 하는 경우 임원 전부의 해임은 임원들의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할 수

있으며, 임원 일부의 해임은 해당 임원의 임기가 1년 이상 경과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구속 기소된 임원의 해임은 임기 경과와 관계없이 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③ 해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8.10.30.>

④ 해임안이 의결되었을 때에는 해당 임원은 즉시 해임된다.

제26조(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자신과 당해 단체의 이해가 상반될 때
3. 제척사유에 해당되는 대의원 또는 임원은 해당 총회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총회 참석 대의원 전원이 찬성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된다.

②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사업결과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기본 자산의 편입 및 처분에 관한 사항
5.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6.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7. 총회 안건 상정에 관한 사항
8. 사무국의 지휘, 감독에 관한 사항
9. 기타 중요사항

제28조(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 규정에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는 의결권을 위임할 수 없다.

③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29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필요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다만,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회장 선임 시 정한 순서에 따라 부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2. 제17조 제4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 ③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5일 전까지 안건·일시·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④ 이사회는 미리 통지된 안건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외의 안건을 상정하여 의결할 수 있다.
- ⑤ 이사회 소집권자의 기피에 의하여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고, 그 의장은 제1항에 의한다.

제30조(긴급한 업무의 처리) 회장은 그 내용이 긴급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집행할 수 있다. 다만, 차기 이사회에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제8장 각종 위원회

제31조(설치) ① 가맹단체의 사업수행과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이사회 자문기구로서 장애인체육회 규약이 정한 범위 내에서 각종위원회를 이사회 의결로써 설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1. 경기력향상(강화) 위원회
2. 법제상별위원회
3. 선수위원회
- ② 각종 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및 위원 약간 인으로 구성한다.
- ③ 각 위원회 위원은 다른 위원회 위원을 겸임할 수 없으며, 제16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회장과 친족관계인자(민법 제777조)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⑤ 동일 대학 출신자 및 재직자가 재적위원수의 20/100을 초과할 수 없다.
- ⑥ 등록선수 및 현직 지도자(비장애인 종목 지도자 제외)는 전문체육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
- ⑦ 각종 위원회의 명칭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로서 따로 정한다.

제9장 가맹단체 구 지부

제32조(지위 및 명칭) ①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는 중앙 가맹단체의 시·도 지부이며, 산하단체로서 가맹단체 구 지부를 둘 수 있다.

- ② 가맹단체 구 지부는 당해 가맹단체에 대하여는 지부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가지며, 각 구 단위를 표시하는 독자적인 명칭을 가진다.

③ 가맹단체 구 지부는 구장애인체육회에 가맹할 수 있으며, 사무소를 해당 지부의 소재지에 둔다. 지역적인 특수성에 따라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3조(임원 승인) ① 가맹단체 구 지부의 임원은 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가맹단체는 임원심의위원회에서 가맹단체 구 지부 임원을 심의할 수 있다.

제34조(규정 승인) ① 가맹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당해 가맹단체 구지부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② 가맹단체 구 지부는 제1항의 당해 구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규정에 의거하되 당해 가맹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에 부합하는 규정을 제정하여 가맹단체와 구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동 규정 개정 시마다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당해 경기종목 대회운영 규정 등 종목 관련 전문규정은 중앙 경기단체 및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의 지도·감독을 받는다.

제35조(이의신청 및 감사) ① 가맹단체 구 지부는 해당 가맹단체에 구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임원 승인 사항을 즉시 보고 하여야 하며, 보고를 받은 가맹단체는 시정사항이 있으면 2주일 이내에 사실을 적시하여 해당 구 장애인체육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구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의 시정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이를 처리하여야 하며, 불분명한 경우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③ 가맹단체는 가맹단체 구 지부에 위임한 사업 및 예산을 직접 지원한 사업에 대하여 가맹단체 구 지부를 감사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 구장애인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규약(또는 정관) 등을 준용한다.

④ 가맹단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가맹단체 구 지부의 조직운영, 사업 및 회계업무 전반에 대하여 조사·감사할 수 있다.

⑤ 가맹단체는 제4항에 따라 조사·감사결과 업무관련 비위 또는 해태가 있는 임직원에게서 구 장애인체육회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제35조의2(구 지부 가맹단체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 요구) ① 장애인체육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단체 구 지부에 대한 관리단체 지정을 구 장애인체육회에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구 장애인체육회는 요구기간 내에 해당 가맹단체 구 지부를 관리단체로 지정하여야 하며, 기간 내에 관리단체 미 지정 시에는 요구기간 만료일 익일부터 관리단체 지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1. 승부조작 및 단체운영 관련 범죄사실로 다수의 임·직원이 기소되는 등 정상적인 조직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2. 정부 감사결과 관리단체 지정의 처분요구가 있을 경우

3. 장애인체육회 규약 등 제규정의 중대한 위반
 4. 장애인체육회 지시사항의 중대한 위반
 5. 60일 이상 장기간 가맹단체장의 결위 또는 사고
 6. 가맹단체와 관련한 각종 분쟁
 7. 재정악화 등 기타 사유로 원만한 사업수행 불가
 8. 총회, 이사회 등의 의결기구 운영을 고의적으로 방해하거나 이를 조장하는 경우
- ② 제1항에 따른 관리단체 지정은 장애인체육회 관리단체운영규정 제4조의 효력과 동일하며, 구 장애인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와 협의하여 관리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

제36조(가맹단체 구 지부 총회) 가맹단체 구 지부의 대의원은 구 장애인체육회 이사회 의결로서 따로 정하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의2(총회구성 불가시 대체 기관) 가맹단체 구 지부는 대의원구성이 5인 이하인 경우 구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가 총회의 기능을 대체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개최기한 및 규정준용) ① 가맹단체 구 지부는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회장이 소집한다.

② 구지부 가맹단체 총회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 규약 및 이 규정 중 가맹단체 대의원 총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장 자산 및 회계

제38조(재원) 가맹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시비, 국고 및 기금)
2. 소유의 동산 및 부동산
3.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기부금 및 찬조금
5. 사업수입금
6. 기타 수입금

제39조(재산의 구분) ① 가맹단체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가맹단체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40조(재산관리) 가맹단체의 기본재산을 양도, 증여, 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

하고자 할 때, 또는 가맹단체가 업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결의를 거쳐 장애인체육회 또는 서울특별시 주무부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차입금(해당 회계연도내의 수입으로 상환하는 일시 차입금은 제외)에 대하여도 같다.

제41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편성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중요사업계획 및 예산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매 회계 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장애인체육회가 지원하는 교부금 및 각종 지정후원금(각종 국내·외 대회 등), 일반후원금(사무국 일반 후원금) 집행완료 후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결과 보고를 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산보고서

2. 예산 집행관련 증빙서류 사본 일체. 단, 정산서에는 총사업비 재원(기금, 지방비, 지정후원금, 자체예산 등)별로 구분하여 증빙되어야 한다.

3. 일반 후원금에 대하여도 별도 보고하고 증빙되어야 하며, 모든 후원금의 잔여예산 집행에 대하여도 장애인체육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교부금을 제외한 재원에 대해서도 위반행위가 발견될 경우,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제재하고, 최대 3년간 가맹단체 운영비의 50/100까지 삭감할 수 있다.

제42조(회계 연도) 가맹단체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2조의2(사업계획, 예산의 보고) ① 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마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을 마련하여 장애인체육회의 보고 후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를 총회에 보고한다.

② 가맹단체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결산서를 작성하여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장애인체육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장 사무국

제43조(사무국) ① 가맹단체는 사무집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기타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명하고 경기단체 사무를 관장한다.

③ 사무국장은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④ 가맹단체는 임원의 친족을 사무직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다만, 임원 취임 전 사무국 직원으로 채용된 자는 예외로 한다.

제44조(사무국 규정) ① 사무국 직원의 신분보장을 포함한 사무국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규정은 반드시 정하여야 한다.

1. 회계규정
2. 시 대표 선발규정
3. 위임전결규정

② 가맹단체는 규정 제정 전에 발생한 사안에 대해서는 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제44조의2(전자문서) 사무국의 모든 행정문서는 전자문서로 생산, 결재,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12장 보 칙

제45조(정관 또는 규약 변경) 가맹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을 변경할 때에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0.30.>

제46조(규정 제·개정) ① 가맹단체는 이 규정을 준용하여 정관(규약)을 제·개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이외에 가맹단체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정을 제·개정으로 정한다.

제47조(정관 또는 규약의 해석) ① 이 규정에 의거하여 제정된 각 가맹단체의 정관 또는 규약은 장애인체육회가 승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며, 수정이 있을 때마다 장애인체육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된 정관 또는 규약에 대하여 개·수정 및 삽입이 필요한 때에는 장애인체육회의 결정한 바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② 이 규정은 각 가맹단체 정관 또는 규약에 우선하며, 당해 단체 정관 또는 규약 이 규정에 맞게 변경하지 아니하여 이 규정과 당해 정관 또는 규약이 상이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 장애인체육회 규약에 규정한 조항을 준용할 수 없는 것으로서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및 각 가맹단체 정관 또는 규약의 해석상 불분명한 사항은 장애인체육회가 정한 바에 따른다.

제48조(해산) ① 가맹단체는 재적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한다.

② 가맹단체가 해산하였을 때에는 잔여재산을 장애인체육회(법인은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얻어 서울시 또는 당해 가맹단체의 목적과 유사한 공공단체에 기부한다.

제49조(관련 당사자 간의 분쟁해결) 가맹단체는 대한장애인체육회와 중앙가맹단체,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하여 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및 산하 각급체육회 구성원간의 분쟁에 대하여 대한장

장애인체육회 정관 제33조에 따라 설치된 법제상벌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8.10.30.>

제50조(제한사항) 가맹단체가 장애인체육회의 규약 및 이 규정에서 규정한 사항이나 장애인체육회가 지시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체육회는 가맹단체 운영규정 제5조에서 정한 권리사항을 제한(정가맹단체의 경우, 대의원 자격의 정지를 포함한다)하거나 장애인체육회의 지원금 또는 지원 사항을 중단, 회수, 감액 등의 불이익 처분을 할 수 있다.

제51조(경영공시) ① 가맹단체는 경영의 투명성을 위하여 경영에 관한 중요 정보를 일반국민이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공시항목은 이사회 및 총회 회의록, 예산집행내역, 외부평가, 감사결과와 그 외 가맹단체의 장이 정한 것으로 한다.

부 칙 <2016.1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6년 12월 이전에 사임 및 임기 만료되거나 권위된 가맹단체가 이 규정을 적용하여 회장 및 임원을 선출할 경우 제11조 1항에도 불구하고 그 임기를 2021년 정기 총회까지로 한다.

부 칙 <2018.10.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